Research Article

pISSN : 2287-8920
https://doi.org/10.22716/sckt.2024.12.1.004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기능의 가능성 고찰 -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강현석[1]
[1]대한민국 육군 검찰단 군검사

The Potential of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Functions - Focused on Criminal Trials

Kang Hyun Seok[1]
[1]Military Prosecutor, Republic of Korean Army Prosecutor's Office

[1]**Corresponding author:** wkumnd@naver.com

Received January 4, 2024; **Revised** February 23, 2024; **Accepted** February 26, 2024

ABSTRACT

Chat-GPT나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많은 업무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가의 수가 GDP 대비 적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AI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필요하다. 법원 시스템이나 변호사 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 신뢰도가 낮은 형사 재판의 경우 엄격하고 기계적인 AI에 의한 재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법률가의 업무는 단순히 반복적이거나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인의 업무는 해당 법조문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법 감정이나 정의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나 검사,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그 대체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rvices, such as Chat-GPT and autonomous driving,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our society, various tasks traditionally performed by humans are being replaced by AI. Legal professionals are not exempt from this trend. In countries like ours, where the number of legal practitioner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GDP,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ctive research on AI to enhance citizens' right to legal assistance. This is particularly crucial in areas such as the judicial system and legal representation, where the demand for AI is expected to ris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riminal trials with low judicial credibility, the application of rigorous and mechanical AI-based adjudication could potentially have positive effects. However, there are numerous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Legal work is not merely repetitive or standardized; it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diverse perspectives within society. Legal professionals must be adept at interpreting abstract concepts such as legal sentiment and justice, in addition to finding and applying relevant legal provision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AI in the legal domain, focusing on the possibilities of AI replacing roles in criminal trials, such as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attorneys. It will explore the feasibility of substitution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relevant research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Judge, Prosecutor, Defense attorney, Legal domain

© 2024 b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 헌법은 제27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 다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할 것이라는 개념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하여 변호사의 수가 비교적 적다.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변호사 수를 산정하면 미국의 경우(41.09명)에 비하여 1/10 수준인 3.93명에 그친다[1]. 이러한 여파로 형사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223.7일이나 소요된다[2]. 거의 1년이 가까운 기간만큼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신속한 재판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이 논이 되고 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法曹) 인력을 증원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판사 · 검사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유로 그 증원에는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동의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다. 또한, 변호사 수 역시 한정된 법률시장에서 그 수를 무작정 증원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또 다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는 형사 재판에서는 더욱 그렇다. 죄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통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 사법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단지 법조인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인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영역이 AI에 의해 대체되기 위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 사법(司法)기능과 인공지능의 활용

사법(司法)기능이라 함은 법률의 작용을 일컫는 국가 작용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사법기능이란 재판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권리 ·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쟁송 과정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입법 과정부터 제정된 법률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법(司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기술이 결합되어 활용되는 산업 분야를 리걸테크(Legal Tech)라 한다. 점차 규모가 커지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사업은 법조 플랫폼이나 판례 검색과 같은 단순한 업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단한 법률문서나 계약서 검토뿐만이 아니라 관련 법리나 구체적 유사 사례를 찾아 제시하는 단계까지 발전[3] 하였다. 검찰청에서도 형법상 공소시효나 일출 · 일몰 시간의 계산과 같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판단은 AI를 통하여 수행한다[4]. 미국의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인 '노스포인트'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컴퍼스(Compass)'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판결을 예측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컴퍼스(Compass)'가 분석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미국 대법원이 증거로 활용하면서 AI의 사법적 활용이 대두되어 왔다[5]. 최근에는 openAI, 구글, Facebook이 이른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발전된 AI를 경쟁처럼 선보이며 엄격한 논리성을 전제한 다양한 법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6]. 이처럼 현대의 리걸테크 분야는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거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시장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한 부분을 이룰 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AI가 사법 시스템의 보조 장치로써의 지위를 넘어 인공지능 판사나 인공지능 검사, 인공지능 변호인과 같이 그 역할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에 의한 사법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에서 AI에 의한 사법기능의 대체가능성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관련연구

2.1 인공지능을 활용한 형사 재판의 가능성

형사 재판은 피의자 · 피고인의 유죄 유무를 확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 형벌권 행사의 일체 과정을 의미한다. 형사 재판을 통하여 국가는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를 유지 · 존속시킬 수 있다. 근대 형사 사법 체계가 자리 잡은 이후에는 위하력(威嚇力)을 통한 예방적 목적을 벗어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정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운영되었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국가는 형사재판에서 기소권(검사)과 심판권(판사)을 분리하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는 기소권자로서 검사, 심판자로서 판사, 그리고 피고인의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담당하는 변호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형사 재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 재판을 구성하는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판사는 공정한 심판자로서 눈을 가리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관장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 권력을 활용하여 범죄를 범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능한다. AI에 의한 각 역할의 대체 가능성을 표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Each AI role's key points of contention

구분	AI 판사	AI 검사	AI 변호인
사법기능상 지위/역할	· 심판자로서의 공정한 판단주체 ·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의 적용 · 재판의 진행 및 재판의 질서유지	·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벌권 행사 · 공소의 제기 · 공소 유지 및 형의 집행	·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 ·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일체 소송행위 · 공익을 준수하여 피고인을 변론
법률적 쟁점	· AI 판사를 '법관'으로 의율 할 수 있는지 여부 · 심급제도에서 AI 판사의 법률적 지위문제 · 재판의 오류에 관한 정정 문제	· AI 검사를 '검사' 로 의율 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의 법률상 역할에 대한 AI 적용 범위의 문제	· AI 변호인을 '변호인'으 로 의율 할 수 있는지 여부 · AI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범위의 문제
기술적 쟁점	· 복잡한 알고리즘의 운영 가능 여부 · 추상적 개념에 대한 비교형량 가능 여부 · 법 감정 구현 여부	· 공익의 대표자 지위의 구현 문제 ·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구현 문제 · 피해자의 보호자로서의 기능 구현 문제	· 공익과 피고인의 이익의 비교형량 문제 · 의뢰인과의 감정적 교류 가능 여부 · AI가 자체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

2.2 인공지능 판사의 가능성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한 범죄 사실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며 이에 맞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 받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며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판사의 사회적 책무가 무거운 이유이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 주체로서 판사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형사 사법체계는 판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2.1 인공지능 판사의 법률적 쟁점

그렇다면 AI에 의한 판사가 가능할 것인가. 먼저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법관'의 개념에 AI 판사가 포함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에 위임하도록 정한다. 이에 현행 법관

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제1항 및 동 법 제41조(법관의 임명) 조항에 따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상 법률의 개정을 통해 AI 판사를 정한다면 헌법적 문제, 이를테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심급제도에서 AI 판사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형사 사법제도는 심급제도에 따라 3심제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며 3심은 법률심으로 운영된다. 심급제도의 제도적 특징상 2심이나 3심은 하급심 판례에 대한 교정 내지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7]. 그러므로 만일 인공지능 판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2심이나 3심에서는 다시 인간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심급제로 운영되는 형사 사법제도에서 인공지능 판사에 관한 지위를 정해야 한다. AI 판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급심만을 담당하게 하거나 단순한 형사 재판, 이를테면 단순 폭행이나 절도, 음주운전 등을 제한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법관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I 판사에 의한 재판이 오류일 경우 이를 정정하는 문제이다. AI 판사에 의한 판결이 오류일 경우 이를 판결의 오류로 보아야 할지, AI 판사의 작동 알고리즘의 오류, 즉 일종의 기계적 결함과 같은 하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로 본다면 이는 심급제도에 따라 교정해야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 재판의 기회를 새롭게 부여해야하기 때문이다.

2.2.2 인공지능 판사의 기술적 쟁점

인공지능 판사의 운영을 위한 알고리즘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이는 판사를 비롯한 법조 직역의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쉬운 정형적 업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판사의 업무는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 정의나 국민의 법 감정, 개별 사안에서의 비난가능성, 정상(情狀)관계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추상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비정형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 문언이나 판례, 언론의 동향이나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둔 통계를 통하여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비난가능성이나 정상(情狀)관계 같은 형법적 요소들은 피고인의 전과를 점수화 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률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미리 학습시키고 빅 데이터에 근거하여 능동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숙련된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인공지능 판사가 용인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3 인공지능 검사(檢事)의 가능성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범죄를 밝혀내고, 이를 심판하기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를 대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는 그 지위가 독립적이며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2.3.1 인공지능 검사의 법률적 쟁점

AI 검사가 가능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검사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에는 검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이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영장의 신청 주체로서 검사를 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29(검사의 임명자격)는 검사의 자격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외에는 별도로 정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론상 법률에 AI 검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면 헌법적 · 법률적 문제는 해소될 여지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AI 검사의 역할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점이다.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고 형 확정 이후에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에 더해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AI 검사의 여러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과연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역할 중 어느 부분까지 AI 검사가 대체할 수 있을지에 관련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8] 이다. 한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수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대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제한적으로 공판 수행의 일부 단계를 AI 검사를 활용하여 대체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3.2 인공지능 검사의 기술적 쟁점

우리 형사법 체계는 검사를 국가의 대리자로 본다.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채 국가를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형벌권을 행사한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한 그 대체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검사의 도덕적 · 윤리적 지위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도로 발달된 기계가 아닌 국가의 대리자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현출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검사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량권의 행사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로 하여금 소추권을 독점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법 제247조에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란 검사에게 형법 제51조에 기재된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검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수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여 재량적으로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우리 사법 체계의 능력상 모든 범죄를 재판하고 처벌할 순 없으므로 검사가 1차적인 판단을 통하여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가려내고,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시킬 법령이나 구형 등 다양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검사는 이러한 검사의 고도의 재량적 영역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재판 외의 역할에 대해서 인공지능 검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이다. 검사는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이나 재판 과정, 그 이후의 형의 집행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로서 접근 금지 조치나 강제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담당 검사가 개별적 사안에서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인데 정형화된 역할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공판 절차나 형의 집행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AI검사를 일부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같은 사고형 업무에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혼합형 체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2.4 인공지능 변호인의 가능성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관련 소송행위 일체를 대리한다. 근대 형사 사법 체계에서 변호인은 형사 재판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국가 형벌권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기능한다.

2.4.1 인공지능 변호인의 법률적 쟁점

형사 재판에서 인공지능 변호인이 가능할지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변호인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논의해야 한다. 판사나 검사와 마찬가지고 변호인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할 뿐 그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에 인공지능 변호사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된다면 그 자격에 관한 법률적 평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AI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여부이다.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수사 단계 전체에서 그 권한이 인정된다. 만일 피의자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인의 입회 없이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때 AI 변호인의 참여권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칫 무분별한 AI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의 긴급성과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4.2 인공지능 변호인의 기술적 쟁점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피고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인권적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 근거하여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갖는다. 즉, 피고인의 이익과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역할이 일부 충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변호인이 이러한 이익형량을 어떻게 적법하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정의를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방어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법률적 사무에 적용되는 AI를 충분히 훈련시켜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조력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의 교류나 인간적 공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 피고인은 과도한 처분을 두려워하여 위축되거나 적극적인 변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호인은 그러한 피고인과 충분한 감정적 교류를 기반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판에서 유리한 사항을 이끌어 내야한다. 인공지능 변호인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다. 어색한 답변이나 기계음을 통한 의사소통은 감정적 교류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변호인에 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에 관한 기술적 사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에게 필요한 상상력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다. 피고인도 대부분 처음 겪는 절차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권할 수는 없으나, 적법한 방어권의 조력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횡설수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상상력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내용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경험칙과 정황에 근거해 상황을 제시하거나, 횡설수설 진술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등이 그러하다. 이는 변호인의 경험과 피고인의 성향, 범죄의 특성이나 개별적 정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야 하는 고도의 사고형 업무인데 인공지능 변호인이 이러한 능력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이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5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기능의 대체가능성 평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기능의 대체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쟁점들을 이유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의한 사법기능의 대체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사법기능의 법률적 쟁점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예를 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같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인공지능의 역량이 증명된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기능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검사의 구형이나 법관의 양형 부분은 마치 공식과 같이 정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빅 데이터의 알고리즘 학습에 기반하여 통계적 추론에 의한 귀납적 방식이므로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정형적 업무로 평가되기 때문이다[9].

3. 결 론

기술적 발전에 따라 더 이상 법률가의 업무는 그들의 고유 영역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발달 덕분에 전문성이 요구되던 법적 쟁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문서나 계약, 임대차 등의 민사 문제에서는 이미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형사 재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등과 같은 과거 전통적인 전문직 영역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고위험 일자리인 것이다[10].

AI에 의한 사법기능의 대체의 법률적 쟁점은 인공지능에 관한 사법기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지 와 관련이 있다. 형사 재판은 폭력을 독점한 국가로 하여금 질서를 확립시키고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필연적 장치이다. 이러한 필요적 제도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자격에 관한 헌법적 정함은 없으므로 헌법 개정절차 없이 법률의 개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또, 심급제도나 검사 ·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범위를 정하여 극복할 수 있다. 가령 1심에 한하여 인공지능 재판을 구현하거나 공판절차에 한하여 인공지능 검사나 변호인의 역할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어 보인다.

AI에 의한 사법기능의 대체의 기술적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판사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법률적 판단 이외에 재단하기 어려운 양형사유나 정책적 고려요소를 판결에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법관의 재량영역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관련 기술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검사의 경우 공익의 대표로서 여러 공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가령 생활고에 시달리다 빵을 훔친 장발장을 일반 절도범과 동일하게 대할 순 없는 것이다. 따라서 AI 검사가 공익의 대표 지위나 소추재량권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AI 변호인의 경우 판사나 검사와 다르게 공익적 지위가 비교적 낮아 인공지능의 대체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정의 공감이나 약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역할인 만큼 인공지능 변호인이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형사 사법기능에서 AI에 의한 법조 인력의 대체는 더 이상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인공지능에 의한 재판이야 말로 전관예우나 각 성향 · 감정 등 비합리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배정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관련 논의현황과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23호, pp. 2-3, 2020.
2. 더 중앙, “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258, 2023.
3. 아시아경제, “[AI혁명](66) 복잡한 계약 AI로 한번에...대기업도 점찍은 ‘BHSN’”, https://v.daum.net/v/20230925081401437, 2023.
4. 더 중앙, “문과인데 'AI 도사' 된 이 검사‥동물N번방 실형 증거도 찾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961, 2023.
5. 김승래, “AI시대 리걸테크의 발전과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모색”,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p. 93, 2020.
6. 손지영, “리걸테크(Legaltech) 산업화의 법적 쟁점과 공공선택의 지대추구(Rent Seeking) 제한의 중요성”, 공공선택학저널, 제2권 제1호, p. 83, 2023.
7. 강승식,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안암 법학, 제26권 제3호, pp. 238-239, 2020.
8. 홍지은, 이동희,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범죄수사 - ‘AI 수사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제34권 제2호, p. 61, 2022.
9. 내일신문, “AI, 법관 대체 보다 재판 지원에 도입”,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5114, 2023
10. 정재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예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p. 88, 2021.